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6. 24.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문

1. 제안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가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2조)

1)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 위원 수가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고, 민간 위원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며 자격요건 중 ‘법관’이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개정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타당한 안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규 >

붙임 1

「공직자윤리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